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규 조문 대비표

1. 가중·경감 기준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사유	비율	사유	비율		
가중	(생략)		(현행과 같음)			
	「관세법」 제268조의,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2조 및 제65조를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통고처분 면제의 경우는 처분면제일,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의 선고일) 2년 이내에 다시 위 범조항을 위반한 자		「관세법」 제268조의,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제275조의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2조 및 제65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통고처분 면제의 경우는 처분면제일,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의 선고일) 2년 이내에 다시 위 범조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			재범시 가중 범죄에 관세법 개정에 따른 보세사의 명의 대여죄 등 추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추가 및 형벌조항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문 정비
		2범	+30%	(현행과 같음)	+30%	
		3범 이상	+50%	(현행과 같음)	+50%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사유	비율	사유	비율	
감경	(생략)		(현행과 같음)		
	「관세법」 제255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법률 용어와 일치되도록 조문 정비
	AAA등급 업체	-50%	AAA등급 ²⁾ -----	-50%	등급에 대한 참조 신설
	(생략)	-30%	(현행과 같음)	-30%	
(생략)	-15%	(현행과 같음)	-15%		
(생략)		(현행과 같음)			
수출업자(「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을 포함한다)			-----		참조번호 수정
	전년도 ²⁾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상	-30%	--- ³⁾ -----	-30%	
	(생략)	-20%	(현행과 같음)	-2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0%	
(생략)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조번호 수정
	법규준수도 ³⁾ 95점 이상	-50%	----- ⁴⁾ -----	-50%	
	(생략)	-30%	(현행과 같음)	-30%	
	(생략)	-15%	(현행과 같음)	-15%	
(생략)		(현행과 같음)			
사회적 약자 ⁴⁾ 로 인정되는 자	-15%	----- ⁵⁾ -----	-15%	참조번호 수정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사유	비율	사유	비율		
1)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결정한 등급으로, 위반 행위일의 등급		공인등급 적용 기준 명확화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평가점수<후단 신설>			4) -----고시----- -----평가점수로 위반 행위일이 속한 분기의 평가점수. 단, 위반 행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대상 신고건수가 없어 위반 행위일이 속한 분기에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			행정규칙명 변경 반영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적용 기준 명확화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4.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2023년 7월 1일----- -----	재검토기한 조정